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뇌혈관질환⑦

뇌경색증

- 대 법 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
- 대 법 관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2. 10. 7. 선고, 91구 2107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 476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 믹서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경색증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4. 12 선고, 91 누 476 판결; 1991. 1. 11 선고, 90 누 827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영실업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속 시멘트믹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1963. 4. 1생)가 1990. 4. 25 07:00경 출근하여 10:00경까지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작업현장에 앉아 12:00경까지 쉬다가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계속하여 쉬었으나 회복되지 않다가 그 다음 날 22:00경 좌측뇌기저 부경색증이 발병한 사실, 위 공사장의 작업내용은 통상 7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중 2명은 시멘트를 운반하고, 2명은 시멘트믹서기에 부으며, 1명은 시멘트 믹서기에 약품과 물을 믹서기에 붓는 작업을 맡아 왔었는데, 이 작업은 높이 약 2미터의 시멘트믹서기에 1분에 4포씩 하루에 1,000포 내지 1,300포의 시멘트를 들어올려 붓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따라서 이러한 붓기작업만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경우 붓기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루씩 교대하는 것인데, 같은 해 3.

20경 그 작업조의 반장인 소외 전진형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이후 나머지 6명이 작업을 강행하여 왔고 특히 원고가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원고 혼자서 위붓기 작업을 하여 온 까닭으로 발병일 무렵에는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는 평소보다 더 가중되어 있었던 사실, 뇌경색증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부분의 뇌조직이 피사한 상태를 뜻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일반적인 원인은 ①혈관의 조건(내경동맥 혈관이 협착 또는 압박되거나 또는 경부혈관이 꼬이거나 머리를 돌림으로써 경부혈관이 주위조직에 눌리는 경우 또는 선천성 혈관 이상등) ②혈관의 이상조건(혈액의 혈소판의 접착성 증가, 섬유소원의 상승, 일차 또는 이차성 혈구과다증이나 혈액의 산소분압의 저하 등 혈액응고기전, 병적으로는 심장쇠약이나 폐기종,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 ③뇌관류압이상(혈용량리셉타의 이상, 심근 섬유화, 뇌하수체 부신피질 부전증, 혈관성의 소실, 감각스런 저혈압, 심장부정맥), ④동맥의 경화 등이나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1년간 원인 질환이나 경과악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로로 그 원인이 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며, 원고의 위 뇌경색증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